

#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## 1. 개정이유

-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사전 등록 및 신고제를 시행하고,
  - 회원에게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선진시장 수준의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장치를 제공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사전 등록 및 신고제 시행

- 알고리즘거래 관련 용어의 의미 명확화(안 제2조, 제156조의3)
  - “고속 알고리즘거래” 및 “고속 알고리즘거래자”를 정의규정에 신설하고, “알고리즘거래”에 대한 사항을 정의규정으로 이동

고속 알고리즘거래	① 회원전산센터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에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전용 주문시스템을 설치한 후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② 회원이 자기거래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
고속 알고리즘거래자	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

□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관하여 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및 회원의 수탁 거부사유 등 추가(안 제111조, 제124조)

-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와 회원 간 파생상품거래 약관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
- 회원의 수탁거부 사유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및 등록요건 불충족 발견 등 거래자 관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

□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·신고 의무 및 등록 말소요건,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마련 등(안 제156조의2, 제156조의4, 제156조의5)

-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위탁자의 거래소에 대한 등록의무 및 그 요건\*, 거래자 관리를 위한 회원의 수탁거부 사유 및 거래소의 등록말소 근거를 마련

\* 등록요건: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및 적정성, 전문성 등

-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규정
-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행 계좌의 신고 의무 및 해당 계좌를 통하여만 고속 알고리즘거래호가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

-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관하여 회원에게 전산시스템 점검 의무 및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고, 관련 자료 제출 및 과다호가부담금 부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

#### 나. 접속해제 시 호가취소제도의 도입(안 제156조의6)

-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회원과 거래소간 시스템 연결이 해제되는 비상상황의 경우 모든 호가를 자동으로 취소하는 기능(COD: Cancel On Disconnect)을 마련하여 회원에게 위험관리장치로 제공

#### 다. 기타 조문정비(안 제8조의2, 제69조, 제73조, 제118조)

- 「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('21.6.14), 「코스닥시장 상장규정」 전부개정('21.8.25) 등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- 심사등 : 리스크관리실 심사완료(심사연번호 : 호)  
시장감시본부 협의완료(감시제도-)
-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24호부터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“알고리즘거래”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,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.

25. “고속 알고리즘거래”란 위탁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거래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.

가.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전용 주문시스템(투자의 판단 결정, 주문의 생성·제출 등의 기능이 탑재된 주문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을 이용할 것

나. 제1호의 주문시스템을 회원전산센터(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「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」의 회원전산센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내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(이하 “회원전산센터등”이라 한다)에 설치할 것

26. “고속 알고리즘거래자”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

56조의4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·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.

제8조의2의 제목과 제1항부터 제3항의 “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”을 “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”으로 한다.

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에 한정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73조제1항제3호의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의 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”를 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”로 하며, 같은 항 본문에 “정규거래의 약정가격의 결정(선물스프레드거래는 제외한다)”은 “정규거래의 약정가격의 결정”으로 하고,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

다만,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11조제1항제19호를 같은 항 제20호로 이동하고,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9. 위탁자가 제156조의4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

하는 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제156조의4에 따른 등록의무에 관한 사항

나. 수탁거부 등 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 등을 위하여 세  
칙으로 정하는 사항

제118조제2항의 “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”을 “회원시스템 접  
속 등에 관한 지침”으로 한다.

제124조제1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이동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 
한다.

4.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
해당하는 경우

가. 제156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위  
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

나. 제156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제156조의2제2항의 “거래의 실적 대비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파생  
상품계좌에 대한”을 “과도한 호가건수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제156조의3제1항의 “알고리즘거래(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  
자의 판단,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

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”을 “알고리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”으로 한다.

제156조의4부터 제15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6조의4(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등록 등)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기 전에 해당 위탁자를 거래소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원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등록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위탁자가 이용하는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안정성 및 적정성을 갖출 것
2.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
3. 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
②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회원은 사전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회원은 위탁자 또는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(이하 “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”라고 한다)를 설정·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해서만 고

속 알고리즘거래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고,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철회 등의 조치(이하 “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”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2. 위탁자가 해당 회원을 통하여 등록할 때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을 발견한 경우
3. 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

⑥ 거래소는 공익,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

⑦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 또는 신고절차, 제3항의 계좌 신고방법, 제6항의 등록말소의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156조의5(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등) ① 회원은 위탁자



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하여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위험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거래소는 회원에게 제1항의 수행여부 확인 및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세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56조의6(접속해제 시 호가취소) ① 회원은 회원과생상품시스템과 거래소과생상품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으로서 세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(이하 “접속해제 호가취소”라 한다)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거래소는 세척에서 정하는 범위의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 및 해제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거래소과생상품시스템 및 회원과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준비 및 특례) ① 거래소는 이 규정 시행 1개월 전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② 규정 제124조제1항제4호 및 제156조의4에도 불구하고, 위탁자 또는 회원은 이 규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고속 알고리즘거래 등록 및 신고를

하지 아니하고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할 수 있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2조(정의) ① (생략) 1.~23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 1.~23. (현행과 같음) 24. <u>“알고리즘거래”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</u> <u>의 판단, 호가의 생성</u> <u>및 제출 등을 사람의</u> <u>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</u> <u>스템으로 하는 거래를</u> <u>말한다.</u> 25. <u>“고속 알고리즘거래”</u> <u>란 위탁자가 다음 각</u> <u>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</u> <u>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</u> <u>고리즘거래 또는 회원</u> <u>이 자기거래로서 하는</u> <u>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.</u> <u>가. 위탁자가 소유하거</u> <u>나 직접 통제하는 전</u> <u>용 주문시스템(투자</u> <u>의 판단 결정, 주문</u> <u>의 생성·제출 등의</u> <u>기능이 탑재된 주문</u> <u>시스템을 말한다. 이</u> <u>하 이 호에서 같다)</u> <u>을 이용할 것</u> <u>나. 제1호의 주문시스템</u>	○ 알고리즘 거래 정 의 이동 (제156 조의3→ 본 호) ○ 고속알 고리즘거 래 정의 신설
<u>&lt;신설&gt;</u>		

을 회원전산센터(제8 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「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」의 회원전산센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내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(이하 “회원전산센터등”이라 한다)에 설치할 것

<신 설>

②~⑤ (생략)

제8조의2(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) ① 거래소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 시스템을 효율적·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

26. “고속 알고리즘거래자”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56조의4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·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.

②~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) ①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○ 고속알  
고리즘거  
래자정  
의신설

<p>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시스템의 연결방법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「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」으로 정한다.</p> <p>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「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」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「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 「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」----- - ② ----- 「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」----- ----- ----- ----- ③ ----- ----- 「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」----- -----.</p>	<p>○ 인용조문 정비</p>
<p>제69조(호가의 취소 및 정정) ① <u>회원은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의 종류 및 가격을 정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에 한정한다.</u></p>	<p>제69조(호가의 취소 및 정정) ① <u>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에 한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○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게 조문정비</p>
<p>제73조(단일가격에 의한 개</p>	<p>제73조(단일가격에 의한 개</p>	<p>○ 단일가매</p>

별경쟁거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규거래의 약정가격의 결정(선물스프레드거래는 제외한다)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다. <단서신설>

1. (생략)
2. (생략)
3. 최종약정가격. 다만,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의 최종약정가격은 제외한다.
4. 기초주권이 정리매매종목(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」 제9조 또는 「코스닥시장상장규정」 제47조에 따라 상장폐지 전에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인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약정가격

②~⑥ (생략)

제111조(약관의 기재사항)

① (생략)

별경쟁거래) ①  
-----  
- 정규거래의 약정가격의 결정은 -----  
-----  
---. 다만,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(현행과 동일)
2. (현행과 동일)
3. 최종약정가격. <단서 삭제>
4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~⑥ (현행과 동일)

제111조(약관의 기재사항)

① (현행과 동일)

매 관련  
예외근  
거래매  
치등급  
정 명확  
회를 위  
한 조문  
정비

○ 인용조문  
정비

1.~18. (생략)

<신설>

19. (생략)

제118조(주문의 수탁방법)

① (생략)

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 「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」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주문의 수탁 및

1.~18. (현행과 동일)

19. 위탁자가 제156조의4

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제156조의4에 따른 등록의무에 관한 사항

나. 수탁거부 등 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

20. (현행 제19호와 동일)

제118조(주문의 수탁방법)

① (현행과 동일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회  
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 
지침」 -----  
-----  
-----

○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약관기재사항 규정

○ 현행 제9호를 제20호로 변경

○ 인용조문 정비

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③ (생략)

제124조(수탁의 거부) ① (생략)

1.~3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②~④ (생략)

제156조의2(과다호가의 접수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동일)

제124조(수탁의 거부) ① (현행과 동일)

1.~3. (현행과 동일)

4.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제156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

나. 제156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5. (현행 제4호와 동일)

②~④ (현행과 동일)

제156조의2(과다호가의 접수

○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관하여 수탁거부사유 추가

○ 현행 제4호를 제5호로 변경



제한 및 과다호가부담금)

① (생략)

② 회원은 거래의 실적 대비 과다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과생상품계좌에 대한 과다호가부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위탁자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56조의3(알고리즘거래의 관리) ① 회원은 알고리즘 거래(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,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~④ (생략)

<신설>

제한 및 과다호가부담금)

① (현행과 동일)

② ----- 과다한 호가건수에 대한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동일)

제156조의3(알고리즘거래의 관리) ① ----- 알고리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-----  
-----.

②~④ (현행과 동일)

제156조의4(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등록 등) ①

○ 고속알고리즘거래도 과다호가부담금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정비

○ 중복사항 삭제

○ 고속알고리즘거래

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기 전에 해당 위탁자를 거래소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원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등록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위탁자가 이용하는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안정성 및 적정성을 갖출 것
2.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
3. 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
②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회원은 사전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○ 회원의 사전 신고

③ 회원은 위탁자 또는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 계좌(이하 “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”라고 한다)를 설정·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○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

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해서만 고속 알고리즘거래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거래의무화

⑤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고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철회 등의 조치(이하

○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 중단

“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 중단”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○ 등록요건 미충족

2. 위탁자가 해당 회원을 통하여 등록할 때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을 발견한 경우

○ 거짓작성 및 고의 누락

3. 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

⑥ 거래소는 공익,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

○ 거래소의 등록 직권말소

다.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

⑦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 또는 신고절차, 제3항의 계좌 신고방법, 제6항의 등록말소의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56조의5(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등) ①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위험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거래소는 회원에게 제1항의 수행여부 확인 및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

○ 고속알고리즘거래에 대한 회원의 전산시스템 점검 및 위험관리의무

○ 자료제출 요구

<신 설>

할 수 있다.

제156조의6(접속해제 시 호가

취소) ① 회원은 회원과  
생상품시스템과 거래소  
파생상품시스템의 연결  
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  
되는 상황으로서 세칙으  
로 정하는 경우에는 호  
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 
것(이하 “접속해제 호가  
취소”라 한다)을 사전에  
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  
고, 이 경우 거래소는 세  
칙에서 정하는 범위의  
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접속해제 호  
가취소의 신청 및 해제  
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  
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○ 접속해제  
시 호가  
취소(CO  
D) 근거  
규정 신  
설